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 공포(시행일 : 2007. 3.1)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술등급 승급 범위를 3월 1일 부터는 자격자 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하고 학·경력자는 초급으로만 인정한다.

□ 주요 내용

◎ 기술등급 승급 범위

3월 1일 이후부터는 자격자 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하고, 학·경력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급으로만 인정한다.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와 산업기사의 초급-고급까지의 승급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초급으로만 인정되는 학·경력자의 경우 종전보다 학사 1년, 전문대 3년, 고등학교 3→5년 추가 경력 필요

◎ 기 인정 기술등급의 효력 및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 시행일 이전 등급의 효력

- 2007. 2. 28 이전에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협회)에게 신

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기존 기술등급은 계속 인정

• 시행일 이전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 6개월 신고 유예
기간 부여

- 2007. 3. 1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2007. 2. 28 이전의 경력·학력 및 자격등을 2007. 8. 31 까지 건설교통부장관(협회)에게 신고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교육 훈련-1년 이수 유예기간 부여

-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으로의 승급요건은 충족하나, 전문(승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2.29 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 교육 이수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인정

- 유예기간 내 교육이수의무자는 기술자격자 중 기사, 산업기사로서 특급승급 대상자와 학경력자 중 중급-특급 승급대상자가 해당됨

-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정시한인 2008. 2. 29 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등급의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 필요

◎ 유의사항

- 기사와 산업기사 중 특급으로 승급(초급-고급까지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이나 학·경력자 중 승급 대상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2007. 2. 28 이전의 경력·학력 및 자격이 있는 경우 2007. 8. 31 까지 신고하여야만 승급에 반영되며
- 위와 같이 승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8. 2. 29 이내에 승급(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교육 이수후 전문교육 이수)하여야만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함

건설기술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가. (생략)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u>자격·학력·경력요건</u> 이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u> ----- <u>다음 각 호</u>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u>경력요</u>

현 행	개 정 안
<p>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p>	<p>진-----</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④·⑤ (생 략)</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건설기술심의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 9조 (중 앙 위 원 회 의 기 능) ---제 5조 에 따 른-----다음 각 호-----.</p>
<p>1. ~ 4. (생 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p>	<p>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제5항에 따른-----</p>
<p>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p>	<p>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9조제2항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p>
<p>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p>	<p>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0조제1항에 따른-----</p>
<p>10. (생 략)</p>	<p>10. (현행과 같음)</p>
<p>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 10조 (중 앙 위 원 회 의 구 성) ①-----500인-----.</p>
<p>②~⑧ (생 략)</p>	<p>②~⑧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② (생 략)</p>	<p>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회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p>	<p>③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p>

현 행	개 정 안
<p>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p> <p>1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p> <p>1의4. (생 략)</p> <p>2.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② (생 략)</p> <p>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3. (생 략)</p> <p>④ (생 략)</p> <p>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p> <p>① -----250인 이 내-----.</p> <p>②-----.</p> <p>-----.</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u></p> <p><u>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u></p> <p><u>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u></p> <p><u>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u></p> <p>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다음 각 호-----.</p> <p>1.·2. (현행과 같음)</p> <p><u>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u></p> <p>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⑤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9조제2항 단서 · <u>제85조제6항 · 제90조제4항</u>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 · 제98조제5항 ·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u>일괄입찰 · 대안입찰</u> 등에 관한 사항</p> <p>3.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u>입찰방법에 관한 사항</u></p> <p>4. ~ 6. (생 략)</p> <p>⑥ (생 략)</p> <p>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 · 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u>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 · 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u>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u> 연구기관</p> <p>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u>기업부설연구소</u></p> <p><u><신 설></u></p> <p>7. (생 략)</p> <p>② <u>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 · 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 · 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 · 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 ·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연구 · 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u>연구 · 개발사업비에 법 제16</u></p>	<p>⑤-----.</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85조제6항</u>-----</p> <p>-----</p> <p>-----</p> <p>----- <u>일괄입찰 · 대안입찰</u>-----</p> <p><u><삭 제></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 · 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u>① 법 제 16 조 의 2 제 1 항 에 따 라</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법인</u>-----</p> <p>-----</p> <p>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u>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u></p> <p><u>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 조합</u></p> <p>7. (현행과 같음)</p> <p>② ----- <u>연구 · 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u>-----</p> <p>-----</p> <p>-----</p> <p>③ ----- <u>제2항에 따라</u>----- <u>연구 · 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u></p>

현 행	개 정 안
<p>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 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u>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u>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제29조의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생략)</p> <p>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u>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u>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1. 연구요원의 인건비</p> <p>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p> <p>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p> <p>4. 재료구입비</p> <p>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p> <p>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p> <p>7. 개발보전비</p> <p>8. 과제개발·기술지도 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p> <p>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u>2월 이내에</u>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u>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u>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u>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u></p> <p>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u>15일 이내</u>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력 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u>건설기술연구·개</u></p>	<p><u>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 - - <u>기술개발비</u>를-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29조의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연구·개발비</u>- - - - -</p> <p>1. 연구원의 인건비</p> <p>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p> <p>3. 위탁연구개발비</p> <p>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③ - - - - - <u>90일</u>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개발비- - - - -</p> <p>1. - - - - - <u>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u></p> <p>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증명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u>제4항에 따라</u>- - - - - - - - - - <u>30일 이내</u>- - - - - <u>연구·개발비</u>- - - - -</p>

현 행	개 정 안
<p><u>발사업비</u>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u>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u>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u>다음 각호</u>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u>공모 및 접수</u> 2. 3. (생략) 4. <u>연구성과</u>의 이용·관리 5. (생략) <p><u><신설></u></p>	<p>----- ----- -----.</p> <p>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u>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u>-----</p> <p>-----<u>다음 각 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모·접수 및 선정</u>을 위한 평가 2. 3. (현행과 같음) 4. <u>연구성과</u>의 평가 및 연구성과----- 5. (현행과 같음) <p><u>제35조의2(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u>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에 관한 <u>다음 각 호</u>의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보유 기술인력 <p>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사업으로서 제36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u>다음 각 호</u>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 (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설계등 용역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② (생략)</p> <p>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u>건설교통부장관</u>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p> <p>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② (생략)</p> <p>③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p> <p>④ ~ ⑥ (생략)</p> <p>제38조의11(실시설계) ① (생략)</p> <p>②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③ (생략)</p>	<p>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제3항에 따른-----기술평가기준 등-----에----- 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제38조의19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p> <p>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8조의7에 따른-----제38조의9에 따른----- ----- 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38조의11(실시설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이상----- ----- -----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 8의2. (생략)</p> <p>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p> <p>10. (생략)</p> <p>③·④ (생략)</p> <p>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p> <p>1. ~ 15의2. (생략)</p> <p><신설></p> <p>16. ~ 18.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고시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④·⑤ (생략)</p>	<p>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p> <p>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 -----법 제 39조 제 1항 에 따 라-----</p> <p>-----.</p> <p>1. ~ 8의2. (현행과 같음)</p> <p>9.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건설 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감리원-----.</p> <p>10.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1조(업무의 위탁) ①-----제39조제2항 에 따라-----제3항에 따 라-----</p> <p>-----.</p> <p>1. ~ 15의2. (현행과 같음)</p> <p>15의3. 제35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p> <p>16. ~ 1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p> <p>④·⑤ (현행과 같음)</p>